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69
----------	------

2021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한기영 의원 (찬성의원 23명)

나. 발 의 일 : 2021년 5월 28일

다. 회 부 일 : 2021년 6월 1일

라. 상 정 일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9월 8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기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 불용물품을 타시도 및 자치구, 단체 등에 양여할 경우 이에 대한 조례상 근거와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불용물품 양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며 불용물품 중 사용가능하거나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이 가능한 물품등이 있기에 이러한 불용물품이 특정 단체 또는 자치구에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절차상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받는 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72조).
- 2)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용도, 양여하는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함(안 제7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발생 요인 없음).

다. 입법예고: (2021. 6. 4.~2. 11.)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품 양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해당 물품의 수량·가액·용도·상태, 양여 상대방의 명칭·성명·주소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 양여(讓與): 양여란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민법상 증여에 대응하는 개념임.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① 불용품의 양여는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및 용도 3.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법 제75조),

-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 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불용품은 양여할 수 있음 (법 제7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 양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양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자의적 결정으로 특정 단체 등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등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 법에서는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공공기관, 공익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법 제78조제2항)하고 있고,
 - 법 시행령(제79조)에서는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 선정 요건(제1항부터 제3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용품을 양여할 때에는 양여받는 자의 명칭, 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을 뿐,

- 수집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불용품 양여 과정 및 절차가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무상양여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불용품 양여 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불용물품이 특정 단체 등에 중복 지원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역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공개 대상 중 양여 받은 자의 명칭, 성명(대표자) 및 주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정의)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 해당 정보를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보아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는바, 본 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항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됨(고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대표자 성명 등은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 개인 정보로 취급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10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이하 생략)

- 이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본 개정안에 따른 정보공개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공개 대상이라는(1건) 의견과, 법률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의견(1건), 개인의 경우는 법률의 위임에 없기 때문에 위법하나 법인(단체)의 정보 공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1건)이 제시되었음.

< 입법·법률 자문 결과 >

자문 요지 :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주소 등 개인/단체·법인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구분	자문1	자문2	자문3
질의1 - 개인 정보의 공개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적정 법률 위임이 없는바 위법	적정 공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개 가능	부적정 법률 위임이 없는바 위법
질의2 - 단체·법인정보 공개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정 법인 등의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보기 어려움.	적정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가능	부적정 법률 위임이 없는바 위법

※ 재무국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의견 제시(재무과-28698(2021.6.10.))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목적외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 한편, 불용품의 현황 및 양여의 상대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상정(2021.08.19.)되어 있는바, 법률안 입법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근거가 마련된 후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정보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과는 달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한 불용품 양여 관련 정보공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유재산본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제안일자	회부일	상정일	주요내용
박광우의원 등 12인	2021.03.05.	2021.03.08.	2021.08.19.	불용품 양여 받은자 정보 공개

○ 다음으로, 서울시의 불용품 양여 관련 운영현황을 보면, 실제로 특정단체에 불용품 양여가 집중되어 양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2019년 SR센터 3,015건, 2020년 서울시설공단 1,081건으로 최다

< 불용품 양여 양수자별 집계현황 >

2019년도 (건, 백만원)			2020년도 (건, 백만원)		
양여받는자	건수	금액 (취득금액)	양여받는자	건수	금액 (취득금액)
합계	4,310	17,227	합계	2,293	9,336
SR센터*	3,015	11,981	서울시설공단	1,081	423
120다산콜재단	637	1,856	SR센터*	1,027	7,329
서울디지털재단	335	119	한국IT복지진흥원	79	87
한국IT복지진흥원	108	400	조달청	65	26
서울시설공단	100	15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21	1,282
조달청	43	19	(주)알씨엘	11	21
한서대학교	36	24	구세군호텔용품재활센터	8	1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17	2,708	경북전문대학교	1	166
(주)알씨엘 (서울시폐가전수거팀)	14	18			
휘경공업고등학교	2	28			
서울과학기술대	1	14			
수방사 헌병단	1	22			
홍익대학교	1	27			

* 출처 : 재무국 의원요구자료 제출(1525번, 2021.8.27.), SR센터 개요 별첨

- 법 시행령(79조)에도 불구하고 불용물품을 처분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불용품 무상양여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불용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무상양여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 재무국 불용물품 양여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

(의원 요구번호 1525번, 2021.8.27.에 대한 재무국 제출자료)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 >을 통해 시 전체 물품 취득·이동·불용을 관리하고 있음
 - 운영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
 - 책임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공공기관)
- 정기 재물조사(2년 1회)에서 불용품 발생 현황은 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있지만 불용물품을 처분 항목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별도의 불용물품 무상양여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향후 불용물품 양여 등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재물조사 전 기관 물품관리 직원 대상 교육 내용에 불용물품 양여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재무국은 철저한 불용품 양여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불용품이 특정한 자에게 집중되는 등 처분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사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과 함께, 불용품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후 양여분부터 적용토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 재무국은 관련 정보를 적기에 공개 될 수 있도록 불용품 관리 체계 및 운영자 교육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양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불용품 양여 내역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에 한정하여 공개함.

나. 주요내용

- 불용품을 양여받는 자에 대한 공개 사항 중 개인의 성명, 주소를 제외하여 수정함(안 제72조의2제2항제1호).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469
----------	-------------

제안연월일 : 2021년 9월 8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불용품 양여 내역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에 한정하여 공개함.

2. 주요내용

- 불용품을 양여받는 자에 대한 공개 사항 중 개인의 성명, 주소를 제외하여 수정함(안 제72조의2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여받는 법인(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등기(등록)소재지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p>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p> <p>① 불용품의 양여는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p> <p>1. 양여받는 <u>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u> 및 주소</p> <p>2.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및 용도</p> <p>3.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p> <p>4. 양여하는 사유</p> <p>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p> <p>① ----- ----- --.</p> <p>② ----- ----- ----- -.</p> <p>1. ----- <u>법인(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등기(등록)소재지</u></p> <p>2. ----- -----</p> <p>3. -----</p> <p>4. -----</p> <p>5. ----- -----</p>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① 불용품의 양여는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법인(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등기(등록)소재지
2.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및 용도
3.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양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① 불용품의 양여는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여받는 법인(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등기(등록)소재지 2.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및 용도 3.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